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 집 : 공 보 관 이 충 우
전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제 880 호
1981.12.26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570 호 :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942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4

제 1943 호 : 서울특별시서부한강이촌동일단의주택지경영사업시행규칙폐지규칙 5

제 1944 호 : 서울특별시의례식장등영업허가취급규칙폐지규칙 5

제 1945 호 : 서울특별시건축행정취급규칙폐지규칙 5

제 1946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승차권위탁판매규칙폐지규칙 6

제 1947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정기승차권발급대상학교지정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훈 령

제 557 호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 7

◎ 고 시

제 452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허가 변경 8

제 453 호 :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9

제 454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변경 9

제 45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0

◎ 공 고

제 394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시행공람공고 11

제 395 호 : 도시계획사업 (수산물공판장 - 주차장) 시행에따른 공람공고 11

◎ 사 령

◎ 정정통보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구본석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570 호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제 1 조(목적) 이조례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각교육구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화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이하 "시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교육구청장 소속하에 각각교육구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구정화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 3 조(직무) ①시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구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 6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의여부를 심의한다.

제 4 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7 인 이상 15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경찰국 보안과장, 보건사회국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이 되고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구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구청 학무과장이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해 교육구청소속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이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정화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의 정화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8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6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2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
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수도국"을 "상하수국"으로 "수도국장"을 "상하수국장"으로 "경리과장"을

"업무과장"으로 "각과장"을 "업무과장, 급수과장, 수원기전과장"으로 "경리과경리계장"을 "업무과 경리계장"으로 "경리과 경리계 당해 업무주무자"를 "업무과경리계당해업무주무자"로 "경리과관계계장"을 "업무과 경리계장"으로 "각과 주무계장"을 "업무과, 급수과 및 수원기전과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1항 제2호중 "수도1과장"을 "수도관리과장"으로, "수도1과 관리계장"을 "수도관리과 관리계장"으로 "수도1, 2과장"을 "수도관리과장, 수도공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부한강이촌동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 시행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6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3 호

서울특별시서부한강이촌동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시행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서부한강이촌동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례식장등 영업허가 취급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6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4 호

서울특별시의례식장등영업허가 사무취급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의례식장등 영업허가사무취급규칙(규칙제160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행정취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6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5 호

서울특별시건축행정취급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건축행정 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승차권위탁판매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8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6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승차권위탁판매 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승차권위탁판매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정기승차권발급대상학교 지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28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947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정기승차권발급대상 학교지정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정기승차권발급대상학교 지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호 (목적) 이규칙은 학생에 대한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 1 호중 "지하철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를 "지하철운영사업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 "로 한다.

제 6 조 제목중 "공고"를 "통보"로 "서울특별시에 게재공고한다"를 "서울지방철도청장과 각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2 조를 삭제한다.

제 11 조 (학생증의 발급) ①학생증은 지정학교의 대표자가 발급한다.

②학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발급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증을 부정발급하였을 때에는 그학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한다.

제2조 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5조제1항중 "전조"를 "제4조"로,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제8조중 "전조"를 "제7조"로, 제9조중 "전조"를 "제8조"로, 하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중 "본부장"을 "소장"으로 각각한다.

별지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중 "지하철본부장"을 "지하철운영사업소장"으로 "지하철본부"를 "지하철운영사업소"로, "발매"를 "판매"로 각각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훈령제557호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분석하므로서 재원의 효율적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대상사업) ①이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단위사업비 3억원규모 이상의 사업
2. 외자 또는 기채재원사업
3. 노폭 40미터 이상의 도로 확장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차장시설의 설치이전, 기존주요시설의 폐지를 요하는 사업등 도시기능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이 사실상 추진중에 있어 심사가 불필요한 사업
2. 경제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심사가 불필요한 사업
3.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업무성질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4.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제3조(심사기구) ①기획관리실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를 주관하며 사업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투자관리관을 실무작업반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 정책조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재정기획과장, 시설계획과장과 당해 사업주관과장 및 관계전문가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제4조(심사의 절차) ①사업주관실, 국장 및 산하기관의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7월31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의뢰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심사대상사업중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후 심사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획관리실장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내용) 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성 검토
2. 수급분석
3. 시설규모 분석
4. 수익성분석
5. 자금조달능력분석
6. 원리금상환능력분석
7. 총합평가

제6조(수당)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는 외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규정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45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 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55호(73.4.24)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제463호(79.12.10)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가리봉동 494-4번지 일대
나. 명 칭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다. 면 적 : 366,230평
라. 사업시행자 :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 명 헌
마. 사업기간 : 당초 73.4.30-81.12.31
변경 73.4.30-82.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53 호

도시계획법(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50호(78.12.15)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기간연장)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독산동 553-35
나.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조성공사
다. 면적 : 8,311㎡(2,514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도봉구월계동 468-5호 상신교통(주) 대표이사 안 귀 현
마. 사업기간 : 당초 73.12.15-81.12.31
변경 78.12.15-82.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54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1호(79.3.2)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04호(81.6.3)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마포구성산동 360번지의 55필지(56,54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4호(79.12.10)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허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26

서 울 특 별 시 장

다음 (변경사항)

1) 당초사업시행기간

1979.3.2-1981.12.31

2) 변경후 사업시행허가

1979.3.2-1982.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5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320 호 (81.8.24) 로 결정고시된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28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신설	광로		75	40-50	6,100	신촌로타리 (광 58)	경인고속도로입구 (대 2 - 12)	
폐지	대로	3	85	25	1,250	양평 7 가	양평 4 가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94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호 (78.7.5) 동 고시제 348호 (79.7.28)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제492호 (79.11.26) 로 시행자 명의변경 허가되고 동고시 제 37호 (81.2.16) 로 시행변경 허가된 강남구양재동 539번지외 25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을 변경시행코저 도시계획법 제25조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양재동 539번지외 25필지일대
나. 사업의규모 : 26,142㎡ (동일)
다. 변경내용 : 사업기간연기
당초 - 81.12.31
변경 - 82.12.30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부산시동구대창동 3가61번지
(주)천일여객자동차대표 박남주
부산시동구범일동 252-767
(주)천일성기화물자동차대표 박남규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395호

도시계획사업 (수산물공판장 - 주차장) 시행에따른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418호 (79.9.7) 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수산물공판장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1.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 (구 11-3, 4)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수산물공판장의 주차장시설확장)
나. 시행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이 동 용
라. 추가변경부지 면적 : 413.4평
마.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82.3.31 (예정)
바. 기 타 :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상공과 (전화 725-6714) 에 문의 또는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 령

◎ 1981년 12월 28일자 덕세 522호

민 병 달

지하철건설본부
22호봉
지방토목기사

손 경 하

지하철건설본부
13호봉
지방토목기사

강 선 철

지하철건설본부
17호봉
지방토목기사

전 익 범

지하철건설본부
6호봉
지방토목기사보

◎ 1981년 12월 26일자 령제 530호

운수1과장
서 기 관 배 병 호

세종문화회관 서무과장 직대

세종문화회관서무과장
지 방 서 기 관 홍 기 화

중구시민국장

관악구시민국장
지 방 서 기 관 권 석

운수1과장 직대

내 무 부
지방서기관　권 오 록

관악구 시민국장

◎ 1981년 12월 28일자　　령제 531호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조 번 인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동작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순 기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한 상 호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선유수원지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유 창 진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마포구성산1동
지방행정주사　정 근 태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

중구청소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유 밍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성북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성 노 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용산구사회복지과
행정주사보　이 수 중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양정과
행정주사　손 인 목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양정과
행정주사　신 현 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관악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　박 주 원

안정과 (행정주사)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정 무 성

양정과 (행정주사)

종로구주택과
지방행정서기 문 형

양정과 (행정서기)

마포구총무과
지방행정서기 유 형 근

양정과 (행정서기)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한 석

강 동 구

행 정 과
지방행정주사 이 주 영

동 대 문 구

령제 532호

영 찰 국 교 통 과
지방별정직7급 상당 양 부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 찰 국 교 통 과
지방별정직8급상당 김 종 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제 533호

성 명	발령부서	호봉	직 급
강훈덕	기획담당관	2호봉	지방별정직8급상당 (시사편찬원)
이영희	〃	〃	〃 〃 (〃)
장평용	시정개발담당관	4호봉	〃 〃 (시정연구원)
이순오	〃	5호봉	〃 7급상당 (자료조사원)
최정규	세종문화회관	6호봉	〃 〃 (프로그래머)
이성운	아 동 병 원	15호봉	〃 〃 (의료기기수리기사)
양부원	경찰국교통과	7호봉	〃 6급상당 (전산처리사)
김종훈	〃	3호봉	〃 7급상당 (〃)

◎ 1981년 12월 29일자　　발행 524호

수습행정관	당초		변경		비고
	부서명	수습기간	부서명	수습기간	
이정관	관악구	81.10.21- 82. 4.25	정책조정 담당관	81.12.29- 82. 4.25	

서 울 특 별 시 작

정　　정

시보 제 877 호 (81.12.15) 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무원정년규칙 개정규칙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1년 12월

페이지	오	정
17-3	제 2조 제 2항중	제 2조 제 1항중